

거치식예금 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 2 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만기 후 이율은 예금일 당시 약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뺌다.
- ④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 4 조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 ① 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예금일부터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변경된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뺌다.
-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 3 조 제 3 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당초 만기일 이후에 청구했을 때에는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뺌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